# 청소년유해환경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을 ① 청소년유해매체물, ② 청소년유해약물, ③ 청소년유해물건, ④ 청소년유해업소 및 ⑤ 청소년폭력•학대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약물•물건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출입 및 청소년 폭력•학대행위를 막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판매•대여를 금지하고, 반드시 청소년유해표시와 포장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중독 선택제를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 1
1. 청소년유해환경이란? ..... 4
1.1. 청소년유해환경 개관 ..... 4
1.1.1.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이해 ..... 4
2. 청소년유해매체물 ..... 9
2.1.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 9
2.1.1.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 ..... 9
2.2.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 ..... 13
2.2.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 ..... 13
2.2.2. 매체물의 등급 구분 ..... 16
2.2.3.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 17
2.2.4. 유해매체물의 방송·광고금지 ..... 23
2.2.5.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및 치료 ..... 24
2.3.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 28
2.3.1.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 28
3. 청소년유해약물·물건 ..... 32
3.1.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란? ..... 32
3.1.1.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 ..... 32
3.2. 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 ..... 34
3.2.1.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금지 등 ..... 34
3.2.2.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 36
3.2.3.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등 ..... 39
3.2.4.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 ..... 43
3.2.5.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 48
3.3.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 50
3.3.1.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등 ..... 50
4. 청소년유해업소·구역 ..... 52
4.1. 청소년유해업소·구역이란? ..... 52
4.1.1.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52
4.1.2.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구역 ..... 54
4.2. 청소년유해업소·구역으로부터의 보호 ..... 54
4.2.1.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금지 ..... 54
4.2.2.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 57
4.2.3. 청소년유해행위금지 ..... 58
4.3.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 59
4.3.1.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 59

# 1. 청소년유해환경이란?

## 1.1. 청소년유해환경 개관

### 1.1.1.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이해

#### "청소년유해환경"이란?

#####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

▪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

>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 청소년유해환경의 유형

▪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 구분 | 내용 |
| --- | --- |
| 청소년유해매체물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 ②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 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 |
| 청소년유해물건 | ①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및 ②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③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 |
| 청소년유해업소 | ①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및 ②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 청소년폭력·학대 (청소년유해행위) | 폭력이나 학대를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 및 차단

▪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물건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청소년 폭력·학대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보호 방법 |
| --- | --- |

| | |
|---|---|
| 청소년유해매체물 |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br>—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포장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하고, 신문·잡지 등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br>—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제한 등: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광고 및 선전 등이 제한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 청소년<br>유해약물·물건 |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br>— 유해표시 및 포장의무: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제조·수입한 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며, 포장을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4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제10항). |

| | |
|---|---|
| 청소년유해업소 | **—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br>**—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1항).** |
| 청소년폭력·학대<br>(청소년유해행위) | **—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성적접대행위, 접객행위, 음란행위, 구걸행위, 학대행위, 손님의 유인, 혼숙, 풍기문란 영업행위, 차 종류의 배달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0조).** |

### 청소년 인터넷게임 과몰입 해소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서 학부모가 접속 금지를 요구하는 특정한 시간에도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게임시간 선택제<br>(선택적 셧다운제)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 증가에 따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강화 필요와 정부 및 국민 모두의 동참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참조].

| 구분 | 내용 |
| --- | --- |
| 도입배경 | 1998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지역중심의 민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
| 시행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48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
| 지정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 주요활동 | 청소년유해환경(약물, 매체물, 업소 등) 감시·고발 등 |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에게 약물·물건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고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

▪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건당 5만원 ~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도입배경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약물·물건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고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 운영 |
| 신고처 | 시, 군, 구 |
| 신고방법 | 서면·구두 또는 기타의 방법(「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
| 포상금액 | 5 ~ 20만원(사안별 경중에 따라 차등지급) |

## 2. 청소년유해매체물

### 2.1.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 2.1.1.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무엇인가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 부적절한 매체물을 말합니다[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참조].

▪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 ②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1항).

> ※ "매체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조).
>
> 1. 영화 및 비디오물
> 2. 게임물
> 3.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4.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함)
> 5.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6.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
> 7.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함),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함),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 8.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 9.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위 7. 및 8.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함)
> 10. 옥외광고물과 위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11.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무실·가정 등 옥내(屋內)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傳單)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

※ 각 심의기관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연법」 제5조, 「방송법」 제32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 구분 | 담당매체 | 심의형태 | 심의내용 | 조치사항 |
|---|---|---|---|---|
| **청소년 보호위원회** | 모든 매체물 (음반·음악파일 포함) | 사후심의 | 청소년 유해성 | 청소년 유해매체물 |
| **영상물 등급위원회** | 영화·비디오·영상물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포함) | 사전 등급분류 | 청소년유해성 제한상영제 | 18세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등급분류 |
| | | | 청소년유해성 | 18세 청소년관람불가 연령 등 등급분류 |
|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위원회** | 정보통신물 | 사후심의 | 청소년유해성 | 청소년유해매체물 |
| | | | 불온성 | 거부, 정지, 제한명령 |
| | 방송프로그램 | 사후심의 | 청소년유해성 | 청소년유해매체물 |
| | | | 공공성, 공정성 | 프로그램 정정·중지 등 |
| **간행물 윤리위원회** | 간행물 | 사후심의 | 청소년유해성 | 청소년유해매체물 |
| | | | 유해성 | 수거 폐기명령 |
| **게임물 관리위원회** | 게임물 | 사전 등급분류 | 청소년유해성 |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2항).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그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3항).

-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2항).

>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체적 심의기준**
>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체적 심의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3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개시

▪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의 직권에 따른 심의 개시

-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음반 등의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직권으로 청소년유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5항).

▪ 심의신청에 따른 심의 개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 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6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함)(「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관)
  - √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
  - √ 매체물의 소비자 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 해당 매체물

√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서면(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만 첨부)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

▪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 참조).

▪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5항).

▹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된 매체물

▹ 매체물 각각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

▪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요청

▹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 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 법령에 따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4항).

> **※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
>
>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3조).
>
> · 위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4조 참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에 대한 사실 통보

▹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6항, 제13조제1항제4호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통보는 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내용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각 심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고시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고시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2항).

▹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게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매체물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성인인증을 거친 후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 및 고시 현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현황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관계기관 통보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3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표 1).

>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해야 하는 관계기관 등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2.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

### 2.2.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판매·대여·배포 등이 금지됩니다.**

#### 청소년에 대한 판매·배포 등의 금지

▪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 위반 시 제재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1호).

▹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는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제1호).

#### 유해 미표시 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

▪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3호).

-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2항제2호).

### 미포장 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

- 포장을 해야할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3항).

- 위반 시 제재

  -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4호).

  -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2항제2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구분·격리하여 관리됩니다.

### 유통허용 매체물과의 구분·격리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않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1항).

###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한 전시·진열 금지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다음의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2항 본문).

  1. 영화 및 비디오물
  2. 게임물
  3.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4.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함),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함),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5.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6.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위. 4. 및 5.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2항 단서).

  -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 구분·격리 방법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해야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다음의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해당 매체물의 판매나 대여가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3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5).

|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
| 음반·음악영상물 판매업소 | 19세 미만<br>구입 불가 |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 비디오물 판매업소 | | |
| 만화 판매업소 | | |
|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정기간행물 판매업소 | | |
| 비디오물 대여업소 | 19세 미만<br>대여 불가 | |
| 만화 대여업소 | | |
|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정기간행물 대여업소 | | |

※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그 업소에서 영업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않고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자와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는 시정명령을 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5호·제6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 9).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2항제2호).

**※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 외국 매체물의 유통·소지 금지

·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함)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2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2호).

· 이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제2호).

**유해차단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사이버안심존, cr.kcup.or.kr)**

▪ 사이버안심존은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스마트폰 이용형태를 점검하고 이용시간을 관리·지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사이버안심존은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습관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프로그램(그린i-Net, www.greeninet.or.kr)**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방송·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보다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기술적 인프라인 그린i-Net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그린 i-Net에서는 ①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 활용 프로그램, ② 청소년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 ③ 유해정보 필터링 지원 시스템, ④ 인터넷 정보이용 시간관리 지원서비스, ⑤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2.2. 매체물의 등급 구분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매체물의 등급 구분**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8조제1항).

**등급 구분 종류**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별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9세 이상 가: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 12세 이상 가: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 15세 이상 가: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매체물을 이용하는 습관을 키워주세요.**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 함께 각종 매체물에는 가정에서 청소년이 연령에 맞게 이용·지도하도록 다음과 같이 연령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연령에 맞게 매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체물의 등급구분형태**




<출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9조,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참조>

### 2.2.3.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는 매체물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함)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 매체물 구분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
|---|---|
| 영화 | 영화상영업자 |
| 비디오물 |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
| 게임물 |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
|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
|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함) | 공연자 중 공연을 주재(主宰)하는 자 |
|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정보를 제공하는 자 |
| 방송 프로그램 | 방송사업자 |
| 신문, 인터넷신문 | 발행인 |
|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그 밖의 간행물 | 제작·수입·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
|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 제작·수입·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
|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 간행물의 표시의무자 |

###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4).

|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
| 영화 | 19세 미만 관람 불가 | √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br>√ 표시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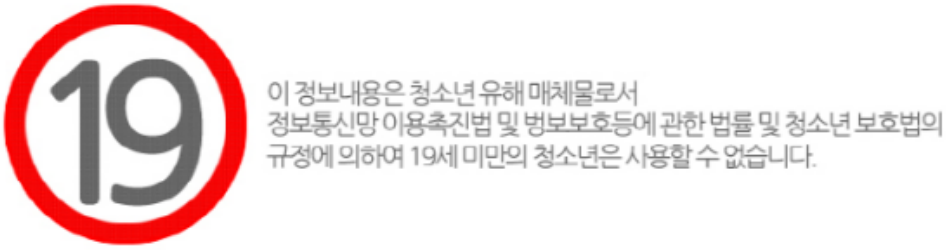
| | | |
|---|---|---|
| 비디오물 | 19세 미만 시청 불가 |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br>√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합니다.<br>√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
| 게임물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br>√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합니다.<br>√ 게임물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
| 음반, 음악영상물 | 19세 미만 청취 불가 |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br>√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합니다.<br>√ 음악영상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
|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

| | | |
|---|---|---|
|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함) | 19세 미만 관람 불가 | √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br>√ 표시는 해당 공연장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합니다. |
|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
| 방송프로그램(라디오방송은 제외함) | 19세 미만 시청 불가 | √ 프로그램의 방송을 시작하기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br>√ 프로그램의 방송 중에는 지름 20㎜ 이상이고 붉은색 테두리 두께가 3㎜ 이상인 크기의 원형 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흰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기재하여 화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합니다. |
| 신문 | 19세 미만 구독 불가 |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br>√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합니다. |
| 인터넷신문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
| 잡지, 정보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 19세 미만 구독 불가 |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br>√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합니다. |

| | | |
|---|---|---|
| 간행물 및 외국간행물 | 19세 미만 구독 불가 |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br>√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합니다. |
| 전자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
|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 19세 미만 구독 불가 |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br>√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합니다. |

※ 비고: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예시>




▪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제재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거·파기명령 및 시정명령(「청소년 보호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제1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 9)을 받습니다.

- 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3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반드시 포장해야 합니다.

### 포장의무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4조제1항).

### 포장대상

▪ 포장해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1.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함),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함)
2.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정보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3. 간행물 및 외국간행물(위 1. 및 2.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함)

### 포장의무자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해야 할 의무자는 이를 발행하거나 제작·수입한 자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포장의무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된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고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매체물의 겉표지가 심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명칭을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 위반 시 제재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2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거·파기명령(「청소년 보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시정명령(「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2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 9)을 받습니다.

√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지 않은 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3조).

## 청소년유해표시·포장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 표시·포장의 훼손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유해표시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5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0조).

### 2.2.4. 유해매체물의 방송·광고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방송이 금지됩니다.**

#### 방송시간의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과 방송을 이용하는 옥외광고물, 상업적 광고선전물 등의 매체물은 다음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

| 구분 |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
|---|---|
| 평일 | 오전 7시 ~ 오전 9시 및 오후 1시 ~ 오후 10시 |
| 토요일 | 오전 7시 ~ 오후 10시 |
| 공휴일과 방학기간 | 오전 7시 ~ 오후 10시 |

※ 다만,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해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오후 6시 ~ 오후 10시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판례> 시청제한처리가 불완전한 영상이 '방송'에 해당하는지, 유료시청 상품미가입 시청자들에게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경우 '유료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청제한처리(소위 스크램블)가 불완전하여 본래의 영상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고 음성이 그대로 송출된 경우, 「방송법」 상의 '방송'에 해당하며, 기본적인 상품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요금을 지급한 자들만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을 기본적인 상품에만 가입한 시청자들에게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경우, 위 방송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규정한 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말하는 '유료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11 판결).

#### 유해매체물의 예고방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 방송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제18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3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광고나 선전이 금지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및 선전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해서도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1항).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4호).
  - 이를 위반한 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7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 9 제7호).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1항).
    - √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3조).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위 옥외광고물을 제외한 영화나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등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2항).

## 2.2.5.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및 치료

###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친권자 동의 필요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 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
  -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함)·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의무

▪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함)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함. 이하 같음]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①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②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③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④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⑤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⑥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⑦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

### 예방조치 대상 게임물

▪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의 기기에서 정보통신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로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1항).

▹ 게임기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4호)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

▹ 컴퓨터(「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단말장치는 제외)

### 예방조치 제외 대상 게임물

▪ 예방조치가 제외되는 게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

▹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제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 중소기업 중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은 위 ③부터 ⑦까지에서 규정한 예방조치 대상으로 한정하여 제외)

▹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는 게임물

### 예방조치의 내용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3항).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2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4항).

  - 정보통신망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제한은 특정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5항).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고지할 때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해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4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6항).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게시해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5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7항).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게임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6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8항).

##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경우 치료와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이란?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이란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 참조).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2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여부 진단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재활을 위하여 협력하는 병원의 지정
-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전문상담 교육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

▪ 스마트쉼센터는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 관련하여 학교 부적응, 학업, 진로, 부모와의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스마트쉼센터에서는 ① 유아,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중독 예방법 교육과 ② 인터넷중독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은 물론 맞벌이, 일반가정의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무직자에게도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쉼센터 이용안내>

| 구분 | 내용 |
|---|---|
| 대상 | 유아동, 청소년, 성인, 학부모, 교사 |
| 대표전화 | 전국 어디서나 ☎ 1599-0075 |
| 홈페이지(모바일) | www.iapc.or.kr (m.iapc.or.kr) |
| 상담비용 | 전액무료 |
| 프로그램 | **— 내방상담**<br>**·개인면접상담: 주 1회(50분), 지속적인 1:1 개인상담 실시(운영시간: 09시 ~ 18시까지)**<br>**·가족상담 치 집단상담, 예술치료, 심리검사**<br>**— 전화상담: 상담대표번호 ☎ 1599-0075 (평일 09시 ~ 22시, 토요일 09시 ~ 18시)**<br>**— 온라인상담: 게시판상담, 화상채팅상담, 메신저상담 가능**<br>**— 가정방문상담** |

<출처: 스마트쉼센터 리플렛 참조>

※ 그 밖에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의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www.nyhc.or.kr)

▪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두고 있습니다(「청소년 기본법」 제17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3호).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는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해 정서·행동 장애를 겪는 9세 ~ 18세 청소년에게 치료재활과 생활보호, 자립지원, 교육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입교를 원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센터 생활상담부(☎ 031-333-19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2.3.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 2.3.1.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유해매체물의 신고방법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신고할 때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자에 대한 포상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

※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5만원 ~ 20만원** 까지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센터 등을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www.kocsc.or.kr)

▪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아이들이 보지 말았으면 하는 유해정보가 발견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여 불법정보는 차단하고 유해정보는 청소년유해성을 심의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합니다(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이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나 불법청소년유해정보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불법청소년<br>유해정보신고 | —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br>—『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 바로가기』 |
| 불법청소년<br>유해정보문의 | — 불법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신고결과 관련 문의<br>— 통신심의 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 질의<br>—『불법청소년유해정보문의 바로가기』 |

▪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 시 홈페이지 “신고” 메뉴에서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야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인정보 | 신고자(단체)명, 주소, 연락처, e-mail, 성별, 연령 구분 등 |
| 신고주소 | 유해정보제공사이트 또는 발생사이트의 상세 주소(URL) |
| 신고제목 | 신고의 핵심내용 |
| 신고내용 | 신고이유 및 불만내용 |
| 증거자료 | 문제가 되는 화면의 캡쳐 그림파일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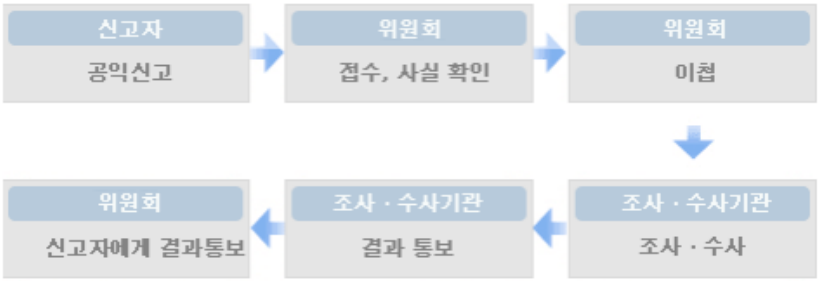
▪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4호).

▪ 공익신고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참조].

<공익신고 처리 절차>




▪ 공익신고 방법

▹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익신고하기”코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참조].

※ 공익신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1398 또는 ☎110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신고하기-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관 관련한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www.safe182.go.kr)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하여 온라인 신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 원인 제공청소년에 대한 친권자 통보

▪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1항).

### 선도·보호조치 필요청소년에 대한 학교 및 친권자 통보

▪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위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함)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2항).

## 3. 청소년유해약물·물건

### 3.1.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란?

#### 3.1.1.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란 무엇인가요?**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개념**

▪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 구분 | 내용 |
|---|---|
| 청소년유해약물 | — 주류<br>— 담배<br>— 마약류<br>— 환각물질<br>—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br>√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br>√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br>√ 습관성, 중독성, 내성(耐性) 또는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
| 청소년유해물건 |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br>√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 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br>√ 청소년에게 인격 비하, 수간(獸姦) 등 반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br>√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br>—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br>√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br>√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또는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를 통보 및 고시 합니다.**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의 작성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6항).

### 통보 대상기관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를 통보해야 하는 관계기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2).

1.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2.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지방경찰청, 시·도교육청
3. 자율규제단체등
4.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체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 1. 및 2.에 따른 행정기관 및 지도·단속 기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아 청소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협회 등

   √ 청소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여성·종교·문화예술·소비자 관련 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의 고시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고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고시명 |
|---|---|
| 청소년유해약물 |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 |
| 청소년유해물건 |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
|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
| |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
| |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칼라풍선의 안전성 문제**

Q.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칼라풍선에서는 독한 냄새가 나고 불고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칼라풍선 판매가 한 때 금지됐다가 요즘 무독성 칼라풍선이라고 붙인 제품을 팔던데요. 여전히 본드냄새가 나는데 안전할까요?

A.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Ethyl Acetate)이 약 14% 함유되어 있으며, 초산에틸은 무색의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인간에게 두통·현기증·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폐·간·심장 등에 유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과 관계없이 본드냄새가 나는 칼라풍선을 어린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초산에틸이 포함된 칼라풍선은 2005년 이후 유통이 금지되고 있지만(「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여전히 학교 앞 문방구에서 초산에틸이 포함된 칼라풍선이 팔리고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3호),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 3.2. 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

### 3.2.1.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금지 등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은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배포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교육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 의사나 치과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에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청소년에게 다음의 약물 또는 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3호 참조).

1. 청소년유해약물

√ 환각물질

√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

2.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 청소년에게 다음의 약물 또는 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참조).

1. 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 담배

2.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

### 청소년의 의뢰를 받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제공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

### 청소년구매약물 구매 권유·유인·강요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구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3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의2).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대여·배포 시 연령확인 의무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 ※ 신분증 위·변조 여부 확인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1382)를 이용하시면 음성 메시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주민등록증에 인쇄된 발급일자 8자리 입력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 > 자치혁신실 > 주민등록,인감 > 주민등록증 > 증 진위확인 페이지 참조].

### 주류 및 담배 판매·대여·배포금지 내용의 표시의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 등”이라 함)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함)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5항).

-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주류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의3).

### 3.2.2.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7항).

-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수입한 자

####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다음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7).

1. 주류

- 표시문구

√ 문구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로 합니다.

√ 군납용으로서 "군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 금지"의 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위의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 크기

√ 문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각형(테두리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사각형으로 함) 안에 표시합니다.

| 용량 기준 | 글자 크기 | 사각형 크기 | 전면 코팅용기<br>(캔류, 코팅 병 등) |
|---|---|---|---|
| 300㎖ 이하 | 12포인트 이상 | 2㎠ 이상 |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는 2포인트 이상, 사각형 크기는 1㎠ 이상 각각 크게 합니다. |
| 300㎖ 초과 500㎖ 이하 | 14포인트 이상 | 3.5㎠ 이상 | |
| 500㎖ 초과 750㎖ 이하 | 16포인트 이상 | 5㎠ 이상 | |
| 750㎖ 초과 1ℓ 이하 | 18포인트 이상 | 6㎠ 이상 | |
| 1ℓ 초과 | 20포인트 이상 | 7.5㎠ 이상 | |

√ 글자체는 견고딕체를 사용합니다.

▹ 색상

√ 사각형 테두리 내 배경색은 상표 도안의 색상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합니다.

√ 문구의 색상은 사각형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합니다.

▹ 위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2. 주류 외의 청소년유해약물 등

|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 |
|---|---|---|---|---|
| | | 크기 | 색상 | 위치 |
| 담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 |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 이상 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담뱃갑 뒷면 |
| 부탄가스 | '이 제품은 흡입 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 제품을 흡입한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용기 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 부탄가스 외 환각물질(공업용은 제외)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업계 자율로 하되, 다른 의무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그 크기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 5)의 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상표 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 |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 중 해당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의 특성상 표시문구나 표시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합니다. | | | |

###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제재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수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 이러한 수거명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수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6호).

▪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1호)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은 반드시 포장을 해야 합니다.

#### 포장의무 대상

▪ 포장해야 할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나목 1)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포장의무자

▪ 위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포장해야 하는 의무자는 이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포장방법

▪ 위 청소년유해물건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고는 그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위 청소년유해물건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위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 포장의무 위반 시 제재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포장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2호).

▪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 포장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수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 이러한 수거명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수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6호).

▪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포장하지 않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2호)

### 누구든지 청소년유해표시·포장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 표시·포장의 훼손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유해표시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포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5조 및 제28조제10항 준용).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0조).

## 3.2.3.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등

##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는 금지됩니다.

###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담배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2 및 제4조제2항).

###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

▪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장소에서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서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합니다.

※ 위의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5).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해당)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 이를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 시 75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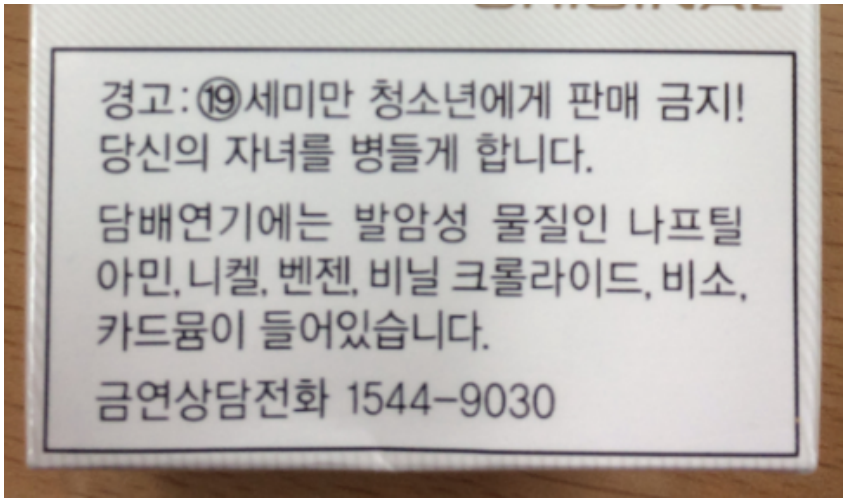
## 담배에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하거나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표시

▪ 담배를 제조·수입한 자는 담배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7항제1호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7).

▪ 담배에 하는 청소년유해표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이상 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하고 바탕색과 보색으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7. 제2호. 가.).

<담뱃갑에 표시된 청소년유해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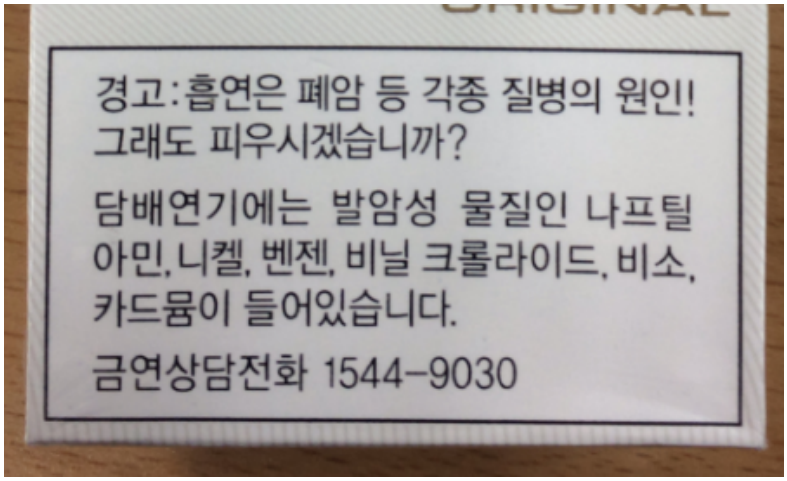



### 경고문구 등의 표기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함)는 담배갑포장지 앞·뒷면·옆면,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스티커(붙임딱지)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및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1.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제7조제1항).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다음의 발암성물질
   - √ 나프틸아민
   - √ 니켈
   - √ 벤젠
   - √ 비닐 크롤라이드
   - √ 비소
   - √ 카드뮴
5.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1544-9030)

<담뱃갑에 표시된 경고문구 등>




**※ 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

-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담배 특성에 따른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2. 씹는 담배 및 머금는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3.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 위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등(발암성물질은 제외)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3호 및 「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4호).

▪ 담배성분 등의 표시

▹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다음의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의 양 옆면 중 한 면,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및 잡지광고에 표시해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제3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조의3제1항).

√ 타르

√ 니코틴

▹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액체형태 담배의 다음의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해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

1. 용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것

√ 니코틴 용액을 직접 담은 용기의 경우: 해당 용기

√ 전자담배기기와 니코틴 용액이 결합된 1회용 제품의 경우: 해당 전자담배기기

2. 포장: 용기를 담는 최종단계의 포장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허위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6호).

#### 담배광고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함)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함]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판매부수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함)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등의 장소 안에서 행하는 광고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4호 및 「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

####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담배사업법」 제25조의5제1항).

### 3.2.4.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

**간접흡연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금연구역의 지정

▪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중 하나인 담배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정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혐연권의 보장**

※ "혐연권"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장소나 생활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규제를 호소하는 권리입니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 둘 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제17조(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

-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함]
- 대안교육기관[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함]
- 대학교의 교사(校舍)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어린이집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영업장의 넓이가 다음의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기한 | 적용 영업소 |
|---|---|
| 2013년 12월 31일까지 |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 2014년 1월 1일부터<br>2014년 12월 31일까지 | 넓이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 2015년 1월 1일부터 | 모든 영업소 |

▹ 식품소분·판매업 중 다음의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기한 | 적용 영업소 |
|---|---|
| 2018년 12월 31일까지 |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 2019년 1월 1일부터 |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

▹ 만화대여업소

▹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함)

**PC방의 금연구역 지정**

Q. PC방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고 흡연구역이 지정되어있긴 해도 금연구역까지 담배냄새가 넘어와서 불쾌한 경우가 많습니다.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도 피해를 줄 거 같은데요.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A.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따라서 현행 법상 공중이용시설인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

√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5).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및 제재

- 누구든지 위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하나요?**

Q. 요즘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A. 법제처의 유권해석(법령해석례 08-0339)에 따르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 있는 필터(카트리지)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 담배에 해당되므로 현행 법령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매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위법입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

## 금연구역에서 금연조치 이행을 위해 금연지도원을 두고 있습니다.

### 금연지도원의 위촉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금연지도원의 직무

-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3항 별표1의4).

| 직무 | 직무범위 |
|---|---|
|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 금연구역의 지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다음의 상태 확인 업무 지원<br>√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위치 및 관리 상태<br>√ 금연구역의 재떨이 제거 등 금연 환경 조성 상태<br>√ 흡연실 설치 위치 및 설치 상태<br>√ 흡연실의 표지 부착 상태<br>√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부착 상태 |
|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활동 및 금연에 대한 지도·계몽·홍보 |
|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 금연금지 구역에서 흡연한 자를 발견한 경우 다음의 조치<br>√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br>√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기 위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 |
| 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 √ 금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br>√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br>√ 금연시설 점유자·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교육 지원 |

### 금연지도원 교육

▪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5항).

### 금연지도원의 활동

▪ 금연지도원은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4항).

▪ 금연지도원은 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6항).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버스정류소, 공원, 광장 등에서의 흡연금지**

Q. 아침 일찍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워서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A. 각 지방자치단체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이나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광장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서울시 기준)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2.5.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조제2항 및 제2조제4호 가목 (1)].

####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판례>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구 「청소년 보호법」 제51조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판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기수시기**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판례> 「청소년 보호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 「청소년 보호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일반 사법인 「민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2조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술을 청소년유해약물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26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51조제8호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51 판결).

## 주류에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하거나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표시

▪ 주류를 제조·수입한 자는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임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7항제1호).

▪ 주류에 표시하는 청소년유해표시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라는 문구를 주류의 용량 기준에 따라 글자 크기를 달리하여 표시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7. 제1호).

###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

▪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

▪ 이를 위반하여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2호).

### 주류광고의 제한

▪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1항).

### 주류광고 준수 사항

▪ 위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

-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
-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않을 것
-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않을 것
-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해야 함

-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않을 것
-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하지 않을 것
-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주류를 방송광고하지 않을 것
-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노래를 사용하지 않을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를 하지 않을 것
  - √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한 7시부터 22시까지의 방송광고
  - √ 라디오방송을 통한 17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의 방송광고 및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방송광고
-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광고를 상영하지 않을 것
- 다음의 시설, 장소나 행사에서 광고를 하지 않을 것
  - √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
  -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
-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간판을 이용하여 7시부터 22시까지 동영상 광고를 하지 않을 것.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 시설의 간판을 이용하여 자사(自社)의 주류를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의 광고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3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1호).

#### 금주구역 지정

▪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

## 3.3.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 3.3.1.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등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약물과 물건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한 신고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나 신고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해약물·물건의 신고방법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신고할 때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자에 대한 포상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

※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5만원 ~ 20만원** 까지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 원인 제공청소년에 대한 친권자 통보

▪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1항).

### 선도·보호조치 필요청소년에 대한 학교 및 친권자 통보

▪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위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함)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2항).

## 4. 청소년유해업소·구역

### 4.1. 청소년유해업소·구역이란?

#### 4.1.1.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란 무엇인가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개념**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②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전단).

▪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후단).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고, 청소년의 고용도 금지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1.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및 아래의 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
2. 사행행위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을 말함)
3.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6.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함
7.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참조)

   √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참조]

>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정보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의 "성평등가족부 특정고시 바로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참조)

√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참조)

9. 일명 '화상 경마'로 불리는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10. 일명 '화상 경륜·경정'으로 불리는 승자투표권 장외매장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되지만,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나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1.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다음의 영업

√ 숙박업(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함)

√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않은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식품접객업 중 다음의 영업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3. 비디오물소극장업

4.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함.

5.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6.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

7. 노래연습장업

### 4.1.2.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구역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요?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개념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구역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1항).

▪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하고,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으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본문).

※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은 "**레드존(red zone)**"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 현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서울특별시 기준)

▪ 현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은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통행금지구역 4개소(윤락가), 통행제한구역 3개소(유흥가 2개소, 윤락가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서울특별시 2022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계획 붙임2 참조).

▪ 통행금지구역: 4개소(윤락가) 2022년 4월 기준

| 구역명 | 시간 | 여건 | 해당구 |
|---|---|---|---|
| 영등포신세계백화점 뒷골목 일대 | 24시간금지 | 윤 락 가 | 영등포구 |
| 영등포역 옆골목 일대 | 24시간금지 | 윤 락 가 | 영등포구 |
| 월곡1동88 텍사스골목 일대 | 24시간금지 | 윤 락 가 | 성북구 |
| 천호4가 텍사스골목 일대 | 24시간금지 | 윤 락 가 | 강동구 |

▪ 통행제한구역: 3개소(유흥가 2개소, 윤락가 1개소) 2022년 4월 기준

| 구역명 | 시간 | 여건 | 해당구 |
|---|---|---|---|
| 서울역 앞 일대 | 19:00 익일06:00 | 유흥가 | 중구 |
| 이태원클럽가 일대 | 19:00 익일06:00 | 유흥가 | 용산구 |
| 화곡전신전화국건너편 일대 | 19:00 익일06:00 | 윤락가 | 강서구 |

## 4.2. 청소년유해업소·구역으로부터의 보호

### 4.2.1.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금지

#### 청소년유해업소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됩니다.

### 청소년 고용금지 및 연령확인 의무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 **<판례> 청소년고용금지에서의'고용'의 의미**
>
>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업소주인을 청소년 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01판결).
>
> **<판례>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의 내용**
>
>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 연령확인에 필요한 증표제시 요구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 전단).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4호).

▪ 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는 위반 횟수마다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 제5호 및 제6호).

| 위반행위 | 과징금 |
|---|---|
| 위의 의무를 위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위의 휴게음식점영업 제외)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 청소년유해업소에서는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 청소년 출입금지 및 연령확인 의무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

### 연령확인에 필요한 증표제시 요구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8호).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합니다.

### 청소년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의무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6항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8).

|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19세 미만<br>출입·고용금지업소 |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0mm 이상, 다른 한 면이 100m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견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해야 함. |

<청소년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예시>




※ 다만,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8호 및 제59조제9호).

**친권자 등을 동반하면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허용**

▪ 위의 출입금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본문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다만,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의 경우에는 친권자 등을 동반하더라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단서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 4.2.2.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 이하에서는 예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1608호, 2023. 11. 9. 일부개정·시행)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지정기준 및 대상**

▪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구분 | 지정기준 대상 |
|---|---|
|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br>—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br>—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br>—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br>—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통행금지시간 및 제한시간**

▪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

▪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 ※ 그 밖에 해당 지역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 책자형 생활조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2.3. 청소년유해행위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금지되는 청소년유해행위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0조).

1. **성적접대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유흥접객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음란행위**: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장애·기형 등의 관람행위**: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구걸행위**: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학대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호객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풍기문란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차 종류의 배달행위**;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제5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제8호·제9호·제10호).

| 금 지 행 위 | 벌칙 및 근거규정 | |
|---|---|---|
| | 형사처벌 | 행정처분(과징금) |
| 1. 성적접대행위 금지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
| 2. 유흥접객행위 금지 | 10년 이하의 징역 | — |
| 3. 음란행위 금지 | | |
| 4. 장애, 기형 등 관람행위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 — |
| 5. 구걸행위 금지 | | |
| 6. 학대행위 금지 | | |
| 7. 호객행위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 8.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 | | |
| 9. 차종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금지 | |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

## 4.3.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 4.3.1.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청소년유해업소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신고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나 신고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방법

▪ 청소년유해업소를 신고할 때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

※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5만원 ~ 20만원** 까지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 원인 제공청소년에 대한 친권자 통보

▪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고용·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제2항) 및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를 알선·매개하는 등의 유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1항).

### 선도·보호조치 필요청소년에 대한 학교 및 친권자 통보

▪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위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함)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2항).